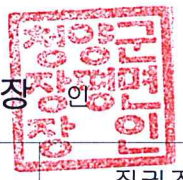
공고 제 12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장평면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순	문 *희 1970-06-11	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안터골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10-12